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3111호 제출년월일 2022. 11. .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

1. 제안이유

-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등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지급 기준과 관광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광진흥사업 추가(안 제7조)
- 나. 관광기념품 등 지급 신설(안 제8조)
- 나. 포상 신설(안 제9조)
- 다. 법제처 "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・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•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09. 7. ~ 09. 27. 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관광진흥법 및 같은법"을 "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"으로 한다.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"관광상품"이란 관광자원, 숙박시설,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적용범위)"를 "(다른 조례와의 관계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다른 법령이나"를 "다른"으로, "것을"을 "경우를"로, "조례가"를 "조례에서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「관광진 흥법」제48조의9"를 "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"로, "관광협의회""를 ""협의회"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"시장"라"를 ""시장"이라"로 한다.

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시티투어버스 및 스탬프투어 운영
- 8. 온라인, SNS(Social Network Service)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
- 9.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관광기념품 등 지급)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
- 2.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포상)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하여 「김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	노관 실·과·소	관광진흥과
임	실·과·소장 성 명	관광진흥과장 이 금 미
안	팀 장 직위·성명	관광진흥팀장 박 준
사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 이진형(☎ 510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·지	제1조(목적)
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<u>관광</u>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	<u>「관광</u> 진흥법」 및 같은 법
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1. · 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"관광협의회"란 「관광진흥	<u>〈삭 제〉</u>
법」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 를 받은 김포시관광협의회를 말한 다.	
4. "관광상품" 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.	3. "관광상품" 이란 관광자원, 숙박 시설,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 비스를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 관광 진흥에 관하여	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<u>것을</u>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가</u> 정하는 바에 따른다.	<u>다른</u> <u>경우를</u> <u>조례에</u> <u>서</u>
제4조(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<u>「관광진 흥법」</u> 제48조의9에 따라 김포시관광협의 회(이하 <u>"관광협의회"</u> 라 한다)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	제4조(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) ① <u>「관광진흥법」</u> 제48조의9 <u>"협의회"</u> 2)

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, 협의회 를 설립하려는 자는 김포시장(이하 "시장" 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.

③ · ④ (생 략)

제7조(관광 진흥 사업) 시장은 관광 진 제7조(관광 진흥 사업) ------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7. (생략)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"시장"이라
 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시티투어버스 및 스탬프투어 운 영
- 8. 온라인, SNS(Social Network Servi ce)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
- 9. 관광자원 개발, 관광산업 육성, 관 광활성화 사업
- 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
- 제8조(관광기념품 등 지급) 시장은 관 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 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 우
 - 2.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포상)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 한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하여 「김 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

		<u>있다.</u>	
<u>제8조</u> ~ <u>제10조</u> (생	략)	<u>제10조</u> ~ <u>제12조</u> (현행 제8조부터 제1	
		0조까지와 같음)	

참고 1 현행 자치법규

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7. 13.] [경기도긲포시조례 제1825호. 2021. 7. 2.. 일부개정]

-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·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관광객"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김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 이외의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관광사업자"란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.
 - 3. "관광협의회"란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김 포시관광협의회를 말한다.
 - 4. "관광상품"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 코스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『관광진 흥법』제 48조의9에 따라 김포시관광협의회(이하 "관광협의회"라 한다)의 설립을 허 가할 수 있다.
 -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 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,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김포시장(이하 "시장" 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
 - 2.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 - 3. 관광 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
 - 5.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- 제5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 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6조(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
 - 2.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
 - 3. 그 밖에 김포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우
 - 2.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, 회의, 행사에 참여한 경우
 - 3. 그 밖에 시장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
- **제7조(관광 진흥 사업)**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
 - 2. 국내·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
 - 3.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
 - 4.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
 - 5. 관광안내소 운영
 - 6.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
 - 7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(보조금 등의 지급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21.7.2.〉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